

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

2015. 11.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서



1. 최근 법령 개정 주요내용



2. 추가공사 대금 분쟁예방



3. 주요 심결 사례



4. 사건처리절차

1. 최근 법령개정 주요내용

1. 최근 법령 개정 주요사항

가. 부당단가인하 관련 규정 정비

나. 3배 손해제 적용 대상행위 확대

다. 대금지급보증제도 기간 설정

라. 부당특약 금지

마. 대물변제시 절차규정 보완

바. 전속고발권 개편 및 보복행위 벌칙 강화

사. 일부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

【 하도급법 규율내용 개관 】

원사업자 의무 (9개)	1. 서면발급, 서류보존 2. 선급금 지급 3. 내국신용장 개설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5. 하도급대금 지급 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7. 관세 등 환급금 지급 8.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원사업자 금지 (13개)	1. 부당한 특약 설정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4. 부당한 위탁취소 5. 부당반품 6. 하도급대금 감액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9. 기술자료 제공요구 10. 부당한 대물변제 11. 부당한 경영간섭 12. 보복조치 13. 탈법행위
발주자 의무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수급사업자 의무	1. 서류보존 2. 계약이행보증(건설) 3.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1. 최근 법 제 개정 사항

가. 부당단가인하 규정 정비 (2014. 5. 28 개정, 2014. 11. 29 시행)

도입 배경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현행조문의 한계 노출 ▶ 구성요건 정비 및 일부 조항 신설				
개정 내용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table data-bbox="450 708 1957 1161"> <thead> <tr> <th data-bbox="450 708 1189 783">기존내용</th><th data-bbox="1189 708 1957 783">개정내용</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0 783 1189 116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td><td data-bbox="1189 783 1957 116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td></tr> </tbody> </table>  단가인하의 수준과 관련하여 입증이 어렵고, 개념도 모호한 “<u>현저성</u>” 기준이 아닌 “<u>낮은</u>” 기준을 도입하여, 법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판단을 용이하게 함	기존내용	개정내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내용	개정내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법 제 개정 사항

가. 부당단가인하 규정 정비 (2014. 5. 28 개정, 2014. 11. 29 시행)

도입 배경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현행조문의 한계 노출 ▶ <u>구성요건 정비 및 일부 조항 신설</u>		
개정 내용	【 하도급법 제4조】		
	관련 조문	기존내용	개정내용
	제2항 제5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2항 제8호	신설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는 계속적 거래를 위하여 원사업자의 단가인하 요구가 부당함에도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아,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여부를 법 위반 고려사항에서 제외함			

1. 최근 법 제 개정 사항

가. 부당단가인하 규정 정비 (2014. 5. 28 개정, 2014. 11. 29 시행)

도입 배경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현행조문의 한계 노출 ▶ 구성요건 정비 및 일부 조항 신설	
개정 내용	【 하도급법 제11조】	
	관련 조문	개정내용
	제2항 제2호	기존내용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개정내용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u>단가인하 소급적용에 대한 법 위반 판단시 적용방법의 일방성 여부*</u> 를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 ※ 과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		

1. 최근 법 제 개정 사항

가. 부당단가인하 규정 정비 (2014. 5. 28 개정, 2014. 11. 29 시행)

도입 배경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현행조문의 한계 노출 ▶ 구성요건 정비 및 일부 조항 신설		
개정 내용	【 하도급법 제11조】		
	관련 조문	기존내용	개정내용
	제2항 제4호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모든 과오에 대하여 감액할 경우,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1. 최근 법 제 개정 사항

나. 3배 손해배제 적용 대상 확대 (2014. 5. 28 제 개정, 2014. 11. 29 시행)

도입 배경	수급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억지력 제고를 위해 제재 강화가 필요 ▶ 기존 기술자료유용 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제 범위를 부당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행위로 확대
개정 내용	기술자료 유용에 따른 피해 배상 (하도급법 제 12조의3) 확 대 - 하도급법 제4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하도급법 제11조 • 부당감액 - 하도급법 제8조 • 부당발주 취소 - 하도급법 제10조 • 부당반품 - 하도급법 제12조의3 • 기술자료유용 ☞ 통상 손해배상은 자신의 손해액 범위내에서 하나, 3배 손해배제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가 가능

1. 최근 법 제 개정 사항

나. 3배 손해배제 적용 대상 확대 (2014. 5. 28 제개정, 2014. 11. 29 시행)

배상액 한도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액 상당, 단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산정시 고려 사 항	• 고의성 여부 • 수급사업자의 피해 규모 및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 • 위반행위에 따른 공정위의 기 시정조치 • 위반행위 양태 및 원사업자의 배상능력, 수급사업자 구제행위 여부 등
배상 요건	• 수급사업자는 위반행위와 피해사실 간의 인과관계 입증 • 원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

1. 최근 법 제 개정 사항

다. 대금지급보증제도 기간 설정(2014. 5. 28 개정, 2014. 11. 29 시행)

도입 배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일부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음 ▶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지급보증 기간을 명문화		
개정 내용	【 하도급법 제13조의2】		
	관련 조문	기존내용	개정내용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이하 생략)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 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이하 생략)

1. 최근 법 제 개정 사항

라. 부당특약 전면금지 (2013. 8.13 제정, 2014. 2. 14 시행)

도입배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외형상 합의의 형태로 각종 부담을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할 경우 현행법으로 제재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특약 금지의무 신설
부당특약 예시	○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1. 최근 법 제 개정 사항

라. 부당특약 전면금지 (2013. 8.13 제정, 2014. 2. 14 시행)

부당특약 예시

- 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 원사업자의 지시로 사토장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증권 상의 보증기간은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몇 년(예, 1년)을 더 길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약정
- 하도급계약기간 중에 수해·눈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연장은 없다는 약정

1. 최근 법 제 개정 사항

마. 대물변제시 절차규정 보완(2013. 8.13 제정, 2014. 2. 14 시행)

도입배경	부실한 대물변제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 ex) 대물로 제공된 아파트에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
원사업자 의무	대물변제 전 물품의 권리, 의무 관계가 적시된 자료 제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특허권등록원부 등 해당 물품에 대한 공부 - 별도 공부가 없는 경우는 해당물품의 권리의무관계가 명시된 공증서류 - 원사업자가 문서 혹은 전자파일로 된 자료를 대면으로 전달 - E-mail로 관련 파일을 송부하는 것도 가능

1. 최근 법 제 개정 사항

바. 전속고발권 개편 및 보복행위 벌칙 강화(2013. 7.16제 개정, 2014. 1. 17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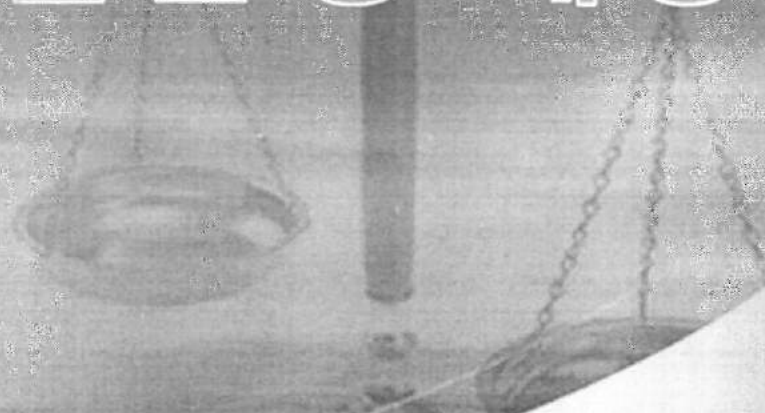
전속고발권 개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 감사원장, 중기청장에 고발요청권 부여
보복행위 벌금 강화	1.5억원 → 3억원

1. 최근 법 제 개정 사항

사. 일부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 (2015. 7. 24.개정, 2016. 1. 25. 시행)

도입배경	소규모 중견기업이라도 원사업자로서 의무만 부담하고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 ▶ 일부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규정의 수급사업자로 보호
조문 내용	【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중견기업 범위 ①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 ②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 <시행령 제7조의4 및 제7조의5(2015. 11. 13 입법예고)> *소규모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 중견기업 ☞ 선박 구성품 제조업: 2천억 미만(3년 평균매출) **대규모 중견기업: 직전연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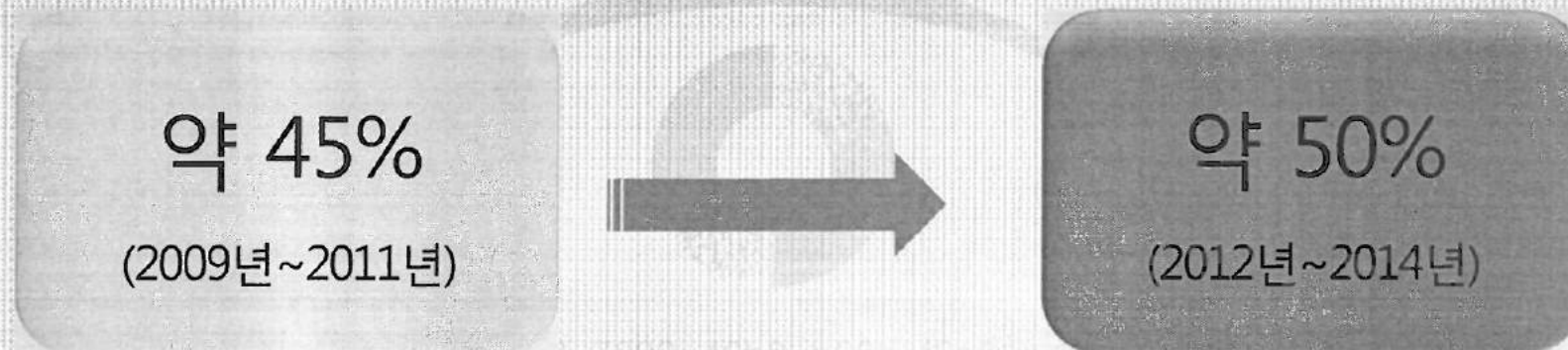
2. 추가공사 대금분쟁 예방



2. 추가공사 대금 분쟁예방

가. 추가공사 대금미지급 신고 현황

□ 전체 하도급 건 대비 추가공사 분쟁 건 비율(공정위 부산)



👉 사건건수로는 98건 증가

2. 추가공사 대금 분쟁예방

나. 추가공사 발생요인 및 문제점

□ 건설공사 추가공사 발생요인

- 발주자 설계변경
- 작업여건 변경 등으로 원사업자 요구

□ 추가공사 문제점

- ▶ 현장 구두발주, 전시공·사후정산 등의 문제로 인해 분쟁발생 시 명확한 근거자료 미비로 구제가 어려움

2. 추가공사 대금 분쟁예방

다. 추가공사 분쟁과 관련 법위반 혐의

● 현장 구두발주



● 서면 미발급

※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면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법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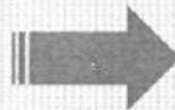
☞ 당초의 계약내용이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추가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서울고법 2013.6.28 선고, 2012누38017판결)

● 늦은 정산시점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 일방적 작업량 결정 등



●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2. 추가공사 대금 분쟁예방

라. 추가공사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법 제3조 제6항)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2010.7.26. 시행)
 -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 요청 가능
 - 원사업자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
- ※ 통지와 회신(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으로 하여야 함

3. 주요 심결 사례



2. 주요 심결사례

(주)○○의 불공정하도급 건 (의결2012-141호)

사건
내용

및

위법성
판단

1. 부당대금결정 행위

- 피심인은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개설공사 중 포장공사’ 등을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낙찰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됨

2.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 피심인은 ‘충무로확장 공사 중 철거 공사 등’을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 피심인의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됨

2. 주요 심결사례

(주)○○의 불공정하도급 건 (의결2012-141호)

사건 내용 및 위법성 판 단	3.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 피심인은 '총무로확장 공사 중 철거 공사 등'을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 피심인의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됨
조치 내용	○ 지급명령 ○ 과징금 부과(약 10억원)

2. 주요 심결사례

(주) ○○ 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건 (의결2013-08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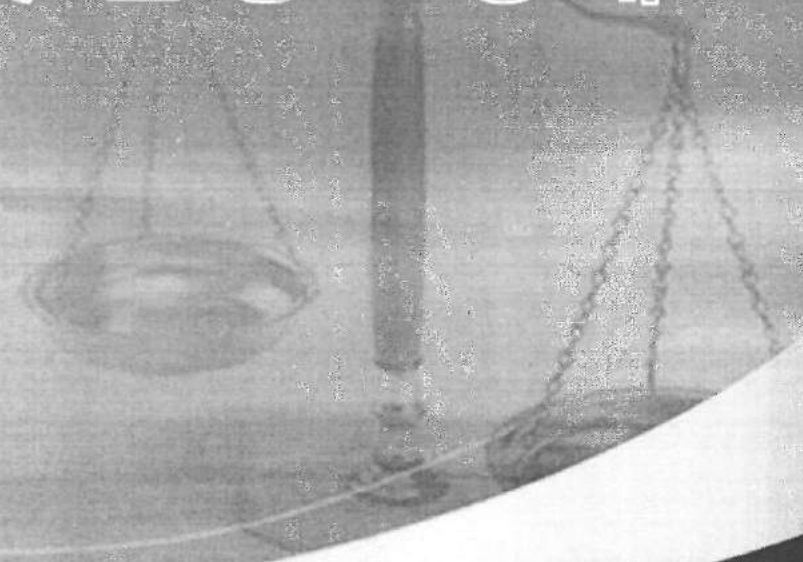
사건 내용 및 위법성 판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피심인은 2009.12.14~2010.4.30 기간 동안 '경인아래벚길 제6공구 수역굴착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54,024m³의 40mm 혼합골재를 납품 받았으나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그 지연이자를 미지급함. ☞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됨
조치 내용	○ 대금 지급명령(7억1천만원) ○ 과징금 부과(1,500만원)

2. 주요 심결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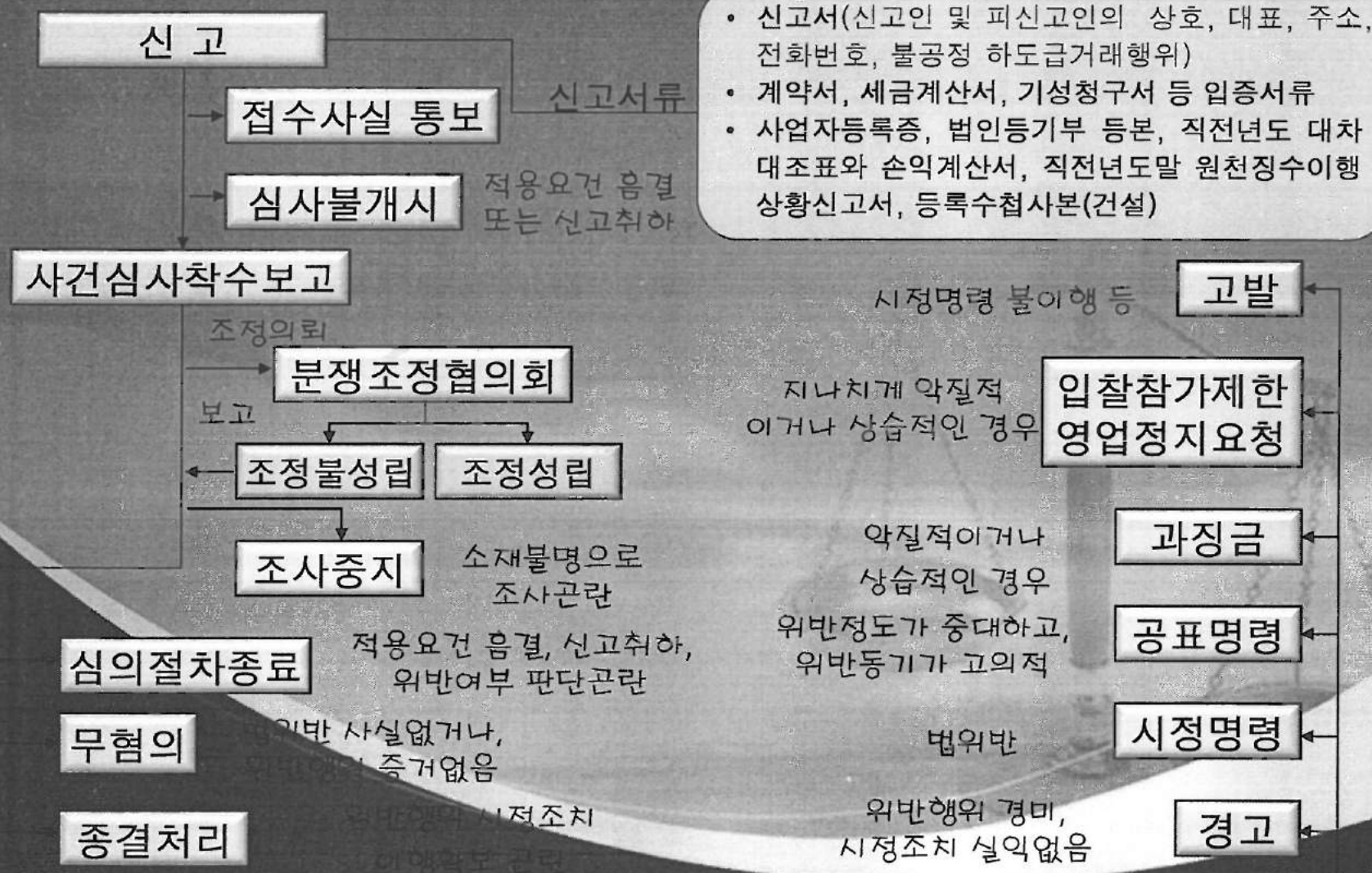
○○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 건 (의결2009-083호)

사건 내용 및 위법성 판단	1.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 피심인은 2005.7. ~2006.12.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117건의 하도급공사를 79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법정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함 ☞ 피심인의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됨 2.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 ○ 피심인은 2003.3.~2006.11. 토공사 등 36건의 하도급공사를 2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것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계약 금액을 증액 받고 법정기한(30일)을 61일~268일을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였음 ☞ 피심인의 대금조정 기한 미준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됨
조치 내용	○ 시정명령(대금지급보증) ○ 행위중지 명령(대금조정 기한 미준수)

4. 사건처리절차 및 분쟁조정제도



3.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 하도급분쟁조정 제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24)

협의 회 설 치	○ 10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하도급법상 의무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11.6.30 설치) 및 <u>9개 사업자단체</u> * 9개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공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소프트웨어협회, 건축사협회, 광고단체연합회
조정 대상	○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신고(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된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의뢰 사건(2015. 10.15. 지침 개정) - 건설, 제조, 수리 : 원사업자 매출액 1조 5,000억 미만 - 용역 : 원사업자 매출액 1,500억 미만 * 다만, 대금 관련 분쟁은 원사업자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조정의뢰 가능
조정 결과	○ 조정 성립 : 공정위가 시정조치한 것으로 간주 ○ 조정 불성립 : 공정위에서 조사 처리

감사합니다

